

전기용품안전인증 Q & A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Q 품질표시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전검사나 기타 검사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고, 그 해당 기관에서 준하는 품질표시 사항을 인쇄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검사에도 해당되지 않는 일반적인 제품일 경우에 품질표시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중국은 아직까지는 수출권한이 있는 업체명으로 수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자와 수출자의 명이가 다를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럴 때 제조회사의 이름을 명기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서류상에 나타나는 수출대리회사의 이름을 명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출대리회사의 이름을 명기해야 된다면, 제조회사가 수출 대리인을 수출 할때마다 다른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당사는 현재까지, 제조국 표기만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제조회사의 이름을 표시 해야 되는지요?

A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8조, 제9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 안전검정대상공산품, 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대하여는 표시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공산품에 대하여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자율적으로 표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부항목의 기재여부도 표시자(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스스로 판단하여 표시하면 됩니다.

다만, 「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산품의 종류별 관련법령에 대하여는 귀하가 알고자 하시는 품목을 알려주시면 추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미국산 전기 다리미 제품을 국내 수입 판매 하려 합니다. 전기 안전 관리법에 의해서 수입 통관 전에 검사를 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검사에 필요한 여러가지 서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미국 제조업체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문의하신 전기다리미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품목입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신청시에는 제품설명서, 전기회로도면, 부품명세표,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하며, 안전인증은 제조자가(외국의 전기용품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 신청 가능) 제품 출고전(통관전)에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